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1. 배경

- 재활용품 수거대란 발생('18.4.1.) 이후,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 신고 의무화 추진

2.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20.11.27. 시행)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1항 제1의 2호: 제15조 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3. 신고품목

재활용폐기물 11종

-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류, 플라스틱, 투명PET, 발포수지류, 비닐포장재, 의류, 전자제품(소형), 기타(잔재물 등)

※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품목은 제외

4. 신고사항

계약사항, 처리실적,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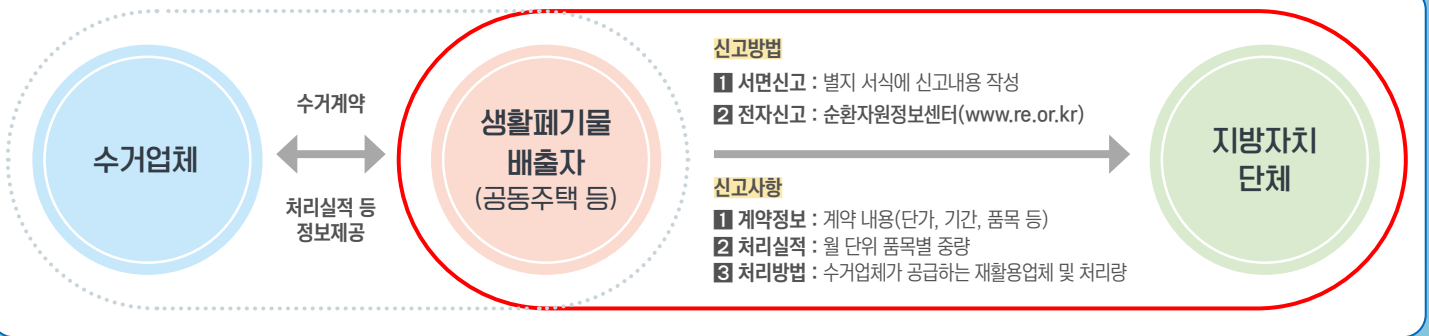
신고주체	신고항목	신고내용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자	계약사항	- 민간수거업체와의 계약 내용(단가, 기간, 품목 등) 신고 ※ 계약 변경 및 해지 내용 포함, 계약서 등록 필수
	처리실적	- 품목별 중량 을 산출하여 월 단위 신고 ※ 중량산출 방법: ①배출자 직접계량, ②수거업체 실적 공유
	처리방법	- 배출된 폐기물의 처리 방법 신고 ※ 품목별 수집운반업체가 공급하는 재활용업체 등

5. 신고방법

①전자신고 ②서면신고(신고자 편의에 따라 선택)

- (전자신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www.re.or.kr)**”을 통한 전자신고(매월 15일까지 전월 실적 신고)
- (서면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지자체에 신고(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 신고)

6. 신고 체계도



7. Q&A

Q1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주체는 누구인가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며,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직접 위탁 처리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업자(위탁 관리업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신고 주체를 선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품목별/월별 위탁 처리량)과 처리방법(품목별 재활용업체 등), 계약(수탁처리업체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Q3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생활폐기물배출자 실적신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21년도 2월 말까지 신고하는 '20년도 처리실적(월별 위탁 처리량)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령 시행('20.11.27.) 이후 실적으로, '20년도 12월 처리실적을 신고합니다.

Q5 꼭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구축한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은 생활폐기물배출자(수거업체의 참고실적 입력 기능 포함)와 자치단체 간에 신고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시스템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6 시스템으로 신고할 때 가입자(실명인증)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은 실제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업무 담당자가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정보수정에서 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Q7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 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300만원 → (2차)500만원 → (3차)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주세요.

8. 연락처

☎ **032) 590-4270~1, 4241~4**

